

제 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111
- 나. 발 의 자: 김순옥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10월 12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2.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지도·감독,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1조의3
-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해당부서: 위생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이라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한 세부사업과 센터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음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식사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구청장의 조치, 센터의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강서구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¹⁾」에 따라 2011년부터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설치 및 위탁운영하였고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강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연혁

구 분	기 간	위탁기관
1차	2011. 4. 26. ~ 2012. 12. 31.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차	2013. 1. 1. ~ 2015. 12. 31.	
3차	2016. 1. 1. ~ 2018. 12. 31.	
4차	2019. 1. 1. ~ 2021. 12. 31.	
5차	2022. 1. 1. ~ 2026. 12. 31.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 7. 28.)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되어²⁾
- 급식관리 지원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구축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도 병행 하였지만³⁾, 관련 자치 법규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
- 이는 전국 지자체가 당면한 상황으로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국 41개소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개정 자치단체는 15개소임⁴⁾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3)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강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위탁기간: 3년 6개월(2023. 7. 1. ~ 2026. 12. 31.) ※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잔여기간

4) 조례 정비 자치단체(2023. 9. 30.기준): 파주시, 진천군, 속초시, 거제시, 익산시, 안동시, 시흥시, 구미시, 포항시, 전주시, 고양시, 서울 광진구, 울주군, 수성구, 강릉시

- 우리 구 또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 이를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안전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2022. 1. 1. ~ 2026. 12. 31. ※ 최초위탁 2011. 6. 10.
- 대 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등록의무)
- 소요예산: 1,05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비 315,000천원, 시비 367,500천원, 구비 367,500천원
- 인력현황: 21명 (비상근 센터장 1/ 부센터장 1, 팀장 3 및 팀원 16)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급식시설 영양·위생 분야 순회 방문지도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실시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및 레시피 등 정보 제공
- 등록관리 현황

(2023. 7. 31.기준)

계		유 치 원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 등	
대상수	인원수	대상수	인원수	대상수	인원수	대상수	인원수
343	10,053	19	1,111	289	8,284	35	658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대 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
- 소요예산: 5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비 15,000천원, 시비 17,500천원, 구비 17,500천원
- 인력현황: 4명 (비상근 센터장 1/ 부센터장 1, 팀장 1 및 팀원 1)
- 사업내용
 -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사회복지시설 영양·위생 분야 순회 방문지도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제21조의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